

군산시 공고 제2011-1528호

「군산시 맛집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년 9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맛집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맛집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군산시 맛집 육성에 따라 맛집의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산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근거 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 내용

- 가. 군산시 맛집의 지정절차(안 제2조)
- 나. 군산시 맛집의 지정시기(안 제3조)
- 다. 군산시 맛집의 지정의 재심사(안 제4조)
- 라. 군산시 맛집의 지정의 취소(안 제5조)
- 마. 군산시 맛집의 지정특례 및 표시의 제한(안 제6조에서 제8조)

3. 의 견 제 출

○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화(063)450-4323 팩스(063)452-8165]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장 박석훈 또는 김선애 [전화(063)450-4323]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업소
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음식업중앙회 군산지회에서 추천한 업소
3. 기타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소

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6항의 현지평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⑤ 시장은 심사위원이 제6항의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에 의한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맛집 지정증과 별표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별표2와 같

다.

⑦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시기) 맛집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개업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신청 할 수 있다.

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2의 현지 평가표에 의하여 제2조제5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맛집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제정 전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관리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종류		주 취급음식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 맛집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 월 년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군 산 맛 집 지 정 증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지정사항 변경내역	☐ ○○○○ . . . 재심사 ☐ 2011. . . 재심사		

위 업소를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한 군산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재교부 사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표 1]

맛집 지정기준

배점순위	평 가 항 목	비 고
1	음식이 맛이 있는 업소	
2	메뉴가 너무나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3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곳	
4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5	같은 음식 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된 곳	
6	위생상태 및 친절도	
7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별표 2]

『군산 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

☐ 업소현황

상 호		주메뉴		대표자	
소재지				전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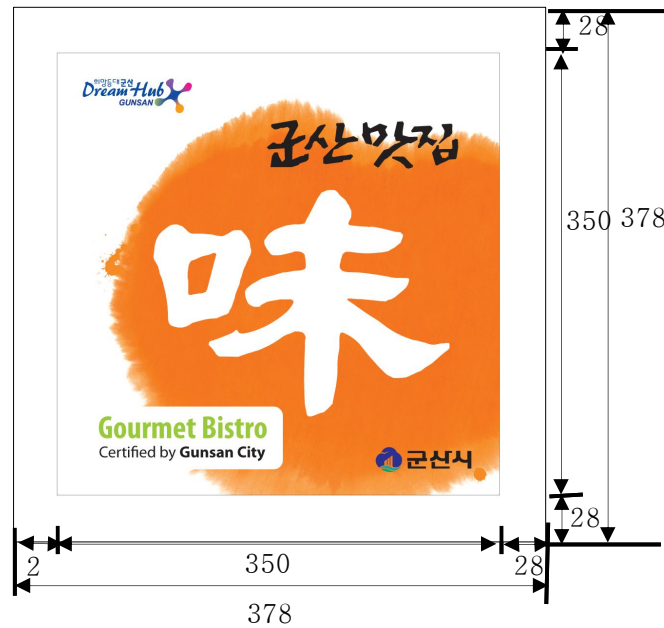
☐ 평가표

구 분	항 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총 점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조리 부분 (70)	맛(50)	주 메뉴의 모양 및 맛 (40)	40	39	37	36	34	33	31	30	
		부·후식의 모양 및 맛 (10)	5	4	3	2					
		주 부식 차림의 조화 (10)	5	4	3	2					
	조리기술 (20)	재료의 특성과 조화 (10)	10	9	8	7	6	5	4	3	
		이용객의 호응도(대중성) (10)	10	9	8	7	6	5	4	3	
환 경 및 접객 부분 (30)	영업환경 (20)	내외부 환경 및 주방 청결도 (5)	10	9	8	7	6	5	4	3	
		접근성 및 편의시설 등 (5)	10	9	8	7	6	5	4	3	
	접객마인드 (10)	손님응대 친절도 (10)	10	9	8	7	6	5	4	3	

☐ 평가자 의견

[별표 3]

군산 맛집 표지판 규격 및 도안



군산시 공고 제 2011-1537 호

군산시주차장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건축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으로 불법주정차를 유도하여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 금지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마련

나. 신규건축물 및 원상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불법주정차 방지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저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주차장 조례 용어수정(법률용어 개선)

▶ ex)시행에 관하여=>시행에, 대하여=>~에, 의하여=>따라 등

나. 제7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③시행령 제3조의2 규정 삭제 법 제 12조의2(다른법률과의 관계)

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2(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④항 신설

▶ 「주차장법」 제6조 2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2009.01.07)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 450-43654, FAX : 450-6404, 전자우편 : doli5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전화 450-4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산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산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2.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가. 3개월분이상 6개월분 미만 : 15%

나. 6개월분이상 : 20%

3. (생략)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③----- 「주차장법」(이하 “법”이라한다)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에 따라 ----- 따른 ----- .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
----- 시장-----

각 호의 어느하나-----
----- . --
----- 따라 -----

예외로 한다.

1. (군산)시장 -----

2. -----
----- 따라 -----
----- .

가.-----
15퍼센트

나.----- 20퍼센트

3.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거부 금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사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 4. (생략)

5.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
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
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
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
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
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생략)

③노외주차장의 설치자(시장이 설
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는 주차
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
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시

유 없이 -----

-.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 ---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따라 교통안전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을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 따라 -----

-----.

②----- 따라 -----
----- 해당 -----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제3
자에 -----

-----.

1. -----
- 이나 -----
----- 이나 --
--

2. -----

법)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생략)

④동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법) 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 -----
-----.

1. ----- 납은매수 -----

2. ----- 납은기간 -----

③ (현행과 같음)

④----- 따라 -----

대해서-----
-----, -----

-----.

⑤주차난이 심한 상가, 시장지역 등에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고객들을 위하여 업주등에게 주차표를 사전교부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운영시간내에 일일징수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과 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일단위로 정산하여 징수 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

⑤-----

----- 따라 -----

-----.

제9조(이용제한) -----

--- 따라 -----

-- 해당 -----
-. -----

- 예외로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해당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④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보
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
항제3호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6
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
에는 일방통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
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
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
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
업을 포함한다.)

----- 해당 -----

-----.

④-----

----- 「주차장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 -

-----.
-----.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
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따라 -----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
----- 따라 -----

----- 따라 -----

----- 따라 -----

7. (생 략)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
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
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
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2. (생 략)

③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
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
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
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
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이
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
역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7. (현행과 같음)

②----- 따
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
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 (현행과 같음)

③----- 등에 -----
----- 따라

--- 해당 -----
-----.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 조례로 -----

-----.

②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 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1. 06.15>

③ (생략)

<신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 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시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 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1. 06.15>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시장이 도심미관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
----- 도보거리
400미터 -----.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 따른 ----- 해
당 -----
----- . -----
----- 따

한 범위안에 노외 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1. 06.15>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01. 06.15>

③제1항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삭제 2001. 06.15>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략)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

른 -----

----- 예외로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01. 06.15>

③-----

--- 따라 -----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따라 -----

-----.

1. (현행과 같음)

2. -----
----- 해당 -----

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 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토지가액의 20퍼센트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3. -----

----- 따른 비교표에 따라 -----
-----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
-----.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산출한 토지가액의 20퍼센트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따라 -----

-----.

1. (생략)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토지가액에 추가로 5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있다.

4. (생략)

③ (생략)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 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 수의 10퍼센

1. (현행과 같음)

2. -----

- . -----

- 50퍼센트 -----
-----.

3. -----

----- 따라 -----

----- 인정하면 -----
----- 규정에 따라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따라 화물의 ---
----- 해당 -----
----- 해당 -----

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5조제8호,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10목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한다.

1.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설치
2. 노외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다만,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장애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3. (생략)

-----.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 따라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

---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인
-----.

1. -----
20대 이상인 -----
2. 노외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다만,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애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
장한다.

3. (현행과 같음)

제21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 (생 략)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따라 ---

-----.
-----.

④ (현행과 같음)

⑤----- 따라 -----

-----.

제22조(과태료 처분) -----
----- 따라 -----

-----.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00차 규제개혁위원회(. . .)와 심의 결과, 별첨

군산시 조례 제 호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주차장에 대하여”를 “주차장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대하여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를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산시장”을 “시장”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군산시장”을 “(군산)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5%”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를 “20퍼센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를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교통안전”을 “따라 교통안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자에게”를 “제3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을 각각 “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을 “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를 “따라 관리수탁자는”으로 한다.

제6조의3 단서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12조의 2에 따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및 대지면적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 폐 율 : 100분의 90이하
2. 용 적 율 : 1천 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잔여매수”를 “남은매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한”을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1. 06.15>

④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시장이 도심 미관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중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 근의 범위는 당해”를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으로, “도보거리 400미터”를 “도보거리 400미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노외주차

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 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01. 06.15>

제16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따

른 비교표에 따라”로,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산출한 토지가액의 20퍼센트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의한 화물 의”를 “따라 화물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장애인”을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대이상인”을 “20대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외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다만,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주차장에 대하여”를 “주차장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대하여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를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를 “따

른 긴급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5%”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를 “20퍼센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를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교통안전”을 “따라 교통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자에게”를 “제3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을 각각 “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을 “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를 “따라 관리수탁자는”으로 한다.

제6조의3 단서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 <삭제>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제2항제1호 중 “잔여매수”를 “남은매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한”을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시장이 도심 미관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중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 근의 범위는 당해”를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으로, “도보거리 400미터”를 “도보거리 400미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노외주차

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 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01. 06.15 >

제16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산출한 토지가액의 20%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의2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처분대상자에게”를 “처분대상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1546호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의 선정(안 제4조)

- 정기분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모범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
- 최근 3년간 군산시 시세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유공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

나.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안 제4조 및 안 제5조)

- 군산근대문화역사박물관 및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의 2년간 무료 관람
- 모범납세자의 경우 5만원 이내의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 지급
- 유공납세자의 경우 개인은 감사패, 법인은 현판의 수여
- 인증서 및 성실납세자증의 교부
-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선정일부터 3년 이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 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정기분 지방세(개인균등분주민세와 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사실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최근 3년간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사실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선정방법)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는 지방세 납부현황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경품추천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추첨 선정

3.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경품추천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추첨 선정

제5조(인증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제4조제3항의 성실납세자에게 개인은 감사패 법인은 현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감사패와 현판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의 선정일부터 2년간 무료관람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는 5만원 이내의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이 나 그 밖의 물품을 지급

3.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홍보

4.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선정일부터 3년 이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성실납세자로 재선정할 수 없다.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

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무료관람 등)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②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인 증 서 (안)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성 명

귀하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성
실납세자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감사패(안)

(단위 : 센티미터)

군산시 로고

감 사 패

성 명

주 소

귀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로서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기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군 산 시 장 ○ ○ ○

직인

○ 규격 : 가로 220cm × 세로 280cm

[비고]

①재 질 : Crystal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회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성실납세기업의 현판(안)

(단위 : 센티미터)

○○○○년 군산시 성실납세기업

법인명

군산시장

○ 규격 : 가로 450cm × 세로 300cm

[비고]

①재 질 : 스텐부식절곡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금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성실납세자증 (안)

(앞쪽)

군산시 로고

군 산 시 성실납세자증

성 명 :
(법인명, 회사명)

주 소 :
(소재지)

적용기간 :

(뒤쪽)

제 호

성실납세자증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라
군산시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장 (인)

- 이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 금강철새생태시설
출입 시 이증을 제시하시면 2년간 무료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7조 관련)

군산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안)

[illegible]

군산시 공고 제2011-1547호

공 고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외
- 기금의 용도 : 광고물의 정비등
- 기금의운용 관리 : 위원회설치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설과(전화063-450-4479, 팩스063-452-817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광고물계담당자
오남인 (전화063-450-4479)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과장(당연임명직), 광고물업무와 연관된 시의 과장(위촉직)
2. 시의회 의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계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분임기금운영관 : 건설과장
3. 기금출납원 : 광고물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1564호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 가입 인증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도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나.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 제5조)
- 다.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라. 건강도시 사업의 수행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안 제7조)
- 마.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다.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건강도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나. 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350/ 군산시 하나운로 17번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 063-460-3218, FAX : 063-463-147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오화정(063-460-32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군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도시의 자연성과 생태성 확보
6.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적 형평성
7.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의 기본이념과 미래의 도시상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5.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도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7.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건강도시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영향평가 실시) ①시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시장, 각 국장
2.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3. 건강도시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4.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지역주민 중 건강도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 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심의 및 자문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 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건강도시에 대한 조언 또는 건의 등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11-7호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년 10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11. 6.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 지원 등) 시행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1항(요금 등의 감면)중 중수도 시설 감면관련,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중수도 시설 감면을 및 감면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 요금 등의 감면- 중수도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적용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시행규칙 제37조)

3. 의 견 제 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063)450-4548 팩스(063)452-8177]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요금계장 최민수 또는 담당자 주소은 [전화(063)450-4548] 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감면
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적용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

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누수요금의 적용

부칙(2011. . . 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수도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수용가 현황	수용가번호		성 명	
	주 소			
	구 경		업 종	
중수도 현황	소유자성명			
	주 소			
	시 설 용 량	m^3 /일	중수도 설치 연 월 일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및 동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중수도 설치 확인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감면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설>	나. <u>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u>
	(1) <u>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2) <u>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u>
	(3) <u>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u>

2. ~ 5. (생략) ② (생략)	<u>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u> <u>(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 2011-8호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과제인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 의무제 삭제」,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적용」 등 반영
- 나. 2005. 1. 1일 인상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그동안 동결 하였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
 - ▶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완료 ('11. 8. 31)

2. 주요내용

- 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신설(안 제3조)
- 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신설(안 제4조)
- 다. 중수도 설치 관리 조항 삭제(안 제7조~제10조)
-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항 수정 (안 제14조 및 별표 1, 2)
- 마. 신용카드 등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납부 신설 (안 제14)
- 바.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신설(안 제17조)
- 사.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부과 신설 (안 제19조③④항)
- 아. 하수도 관련 부담금 감면확대 (안 제23조①항1,6호)

3. 의견제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군산시청 하수과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지, 전화 450-4536, FAX 450-443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450-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안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 시설물등의 공공하수도
2.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때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때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때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 공무원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때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때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때 하수배출량은 최근 6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별표 5]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때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임시사용승인일)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때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 m³/일 이상인 때 10m³/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때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때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②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 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

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영업구역
- (2).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3). 차고지(차폐시설 등) 및 전화설치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며, 도서지역의 분뇨수집 등 의무제외지역은 [별표 8]과 같다.

가. 도서지역

나.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때 및 지역

5.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분뇨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납부한 때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⑥하수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하수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조손가족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과 같다.

제24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때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수도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2조·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업 종	오 수 량(m ³ /월)	요 금 (원)
가 정 용	1 ~ 20	200
	21 ~ 30	280
	31이상	360
일 반 용	1 ~ 30	280
	31 ~ 50	400
	51 ~ 100	480
	101 ~ 500	640
	501이상	840
욕 탕 용	1m ³ 당	240
산 업 용	1m ³ 당	259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별표 2]

하수도사용업종 구분 (제12조제2항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SS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 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의 예(제19조제1항 및 제21조 제2항)
(m³/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 축 물 의 증 축 및 용 도 변 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 과한 건축물의 오 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 시 행 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	5 (미부과)	3	8	-	(A)+(B)<10 0 미부과	1	9
7	15							5	(A)+(B)+(E)> 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 과한 건축물의 오 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 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 건축물과 같 은 방식으로 원 인자부담금 부과 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주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 제1항관련)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약표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280원	150원	1,430원

주) 추가요금은 10L 당 150원으로 한다.

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약표

구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m ³ 까지)	16,730원	1,500원	18,230원
초과요금 (0.1m ³ 마다)	1,210원	150원	1,360원

주) 0.1m³ 미만은 0.1m³으로 본다.

[별표 8]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면	해당지역	면적(km ²)	비고
계	15개 지역	19.881	
옥 도 면	개 야 도	2.170	
	죽 도	0.181	
	연 도	0.730	
	어 청 도	1.800	
	신 시 도	4.252	
	선 유 도	2.132	
	무 녀 도	1.748	
	장 자 도	0.110	
	대 장 도	0.337	
	관 리 도	1.652	
	방 축 도	2.167	
	명 도	0.471	
	말 도	0.363	
	비 안 도	1.630	
	두 리 도	0.138	

[별표 9]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3항 관련)

구분 업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
대중탕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별지 제1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0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검사일자(.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군산시 고시 제2011-68호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9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12	전기공급 설비	군 산 변전소	새만금 변전소	임피면 보석리	30.331	689,820	군산시 고시 제2009-120호 (2009.12.)	
변경	"	"	"	"	"	30.296 (감0.03 5)	693,246 (증3,426)	—	

2.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1-6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9월 26일

1.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새들공원	근린공원	군산시 나운동·수송동·지 곡동 일원	139,157	-	139,157	건설부고시 525호 (1967.7.25)	

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총괄표

시설구분	부 지 면 적(m²)			시설면적(m²)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9,157	-	139,157	7,445.90	(증)3,253.13	10,699.03	18,623.37	(증)8,500.83	27,124.20	
시설면적총계	54,577	(증)236	54,813	7,445.90	(증)3,253.13	10,699.03	18,623.37	(증)8,500.83	27,124.20	
공통시설	4,557	(증)2,770	7,327	-	-	-	-	-	-	
조경시설	760	-	760	-	-	-	-	-	-	
휴양시설	288	-	288	-	-	-	-	-	-	
운동시설	7,160	(증)27	7,187	-	(증)3,246.39	3,246.39	-	(증)6,553.56	6,553.56	
교양시설	41,609	(감)2,561	39,048	7,325.90	(증)6.74	7,332.64	18,503.37	(증)1,947.27	20,450.64	
편익시설	203	-	203	120	-	120	120	-	120	
기 타	84,580	(감)236	84,344	-	-	-	-	-	-	

다.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1) 총괄조서

시설 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시 설 면 적(㎡)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9,157	-	139,157	7,445.90	(증)3,253.13	10,699.03	18,623.37	(증)8,500.83	27,124.20	
시설면적총계		54,577	(증)236	54,813	7,445.90	(증)3,253.13	10,699.03	18,623.37	(증)8,500.83	27,124.20	
공통 시설	소 계	4,557	(증)2,770	7,327	-	-		-	-		
	도 로	3,212	(증)2,770	5,982	-	-		-	-		13개노선
	광 장	1,345	-	1,345	-	-		-	-		5개소
조경 시설	소 계	760	-	760	-	-		-	-		
	조 경 휴 게 지	760	-	760	-	-		-	-		1개소
휴양 시설	소 계	288	-	288	-	-		-	-		
	휴 게 시 설	288	-	288	-	-		-	-		1개소
운동 시설	소 계	7,160	(증)27	7,187	-	(증)3,246.39	3,246.39	-	(증)6,553.56	6,553.56	
	농 구 장	608	-	608	-	-	-	-	-	-	1개소
	X-GAME장	811	-	811	-	-	-	-	-	-	1개소
	인 라 인 트 랙	1,241	-	1,241	-	-	-	-	-	-	1개소
	실내배드민턴장	4,500	(증)27	4,527	-	(증)3,246.39	3,246.39	-	(증)6,553.56	6,553.56	1개소
교양 시설	소 계	41,609	(감)2,561	39,048	7,325.90	(증)674	7,332.64	18,503.37	(증)1,947.27	20,450.64	
	공 연 장	41,609	(감)2,561	39,048	7,325.90	(증)674	7,332.64	18,503.37	(증)1,947.27	20,450.64	1개소
편의 시설	소 계	203	-	203	120	-	120	120	-	120	
	화 장 실	203	-	203	120	-	120	120	-	120	1개소
기타	소 계	84,580	(감)236	84,344	-	-	-	-	-	-	
	녹 지	84,580	(감)236	84,344	-	-	-	-	-	-	

2) 공원 세부시설 변경결정조서

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및수량 (개소)				비고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공 원 전 체 면 적						139,157	－	139,157	7,445.90	(중)3,253.13	10,699.03	18,623.37	(중)8,500.83	27,124.20	－	－	－	－	
시 설 면 적 소 계						54,577	(중)236	54,813	7,445.90	(중)3,253.13	10,699.03	18,623.37	(중)8,500.83	27,124.20	－	－	－	－	
공 통 시 설	소 계				4,557	(중)2,770	7,327	－	－	－	－	－	－	－	－	－	－	－	
	－	－	도 로		3,212	(중)2,770	5,982	－	－	－	－	－	－	－	－	－	－	－	13개노선
	1-1	1-1	중 앙 광 장	수송동 785	479	－	479	－	－	－	－	－	－	－	－	－	－	－	수송택지
	1-2	1-2	광 장 1	수송동 785	110	－	110	－	－	－	－	－	－	－	－	－	－	－	수송택지
	1-3	1-3	광 장 2	수송동 785	485	－	485	－	－	－	－	－	－	－	－	－	－	－	수송택지
	1-4	1-4	광 장 3	수송동 785	157	－	157	－	－	－	－	－	－	－	－	－	－	－	수송택지
	1-5	1-5	광 장 4	수송동 785	114	－	114	－	－	－	－	－	－	－	－	－	－	－	수송택지
조 경 시 설	소 계				760	－	760	－	－	－	－	－	－	－	－	－	－	－	
	2-1	2-1	조 경 휴 게 지	수송동 785	760	－	760	－	－	－	－	－	－	－	－	－	－	－	수송택지
휴 양 시 설	소 계				288	－	288	－	－	－	－	－	－	－	－	－	－	－	
	3-1	3-1	휴 게 시 설	나운동 128-3	288	－	288	－	－	－	－	－	－	－	－	－	－	－	
운 동 시 설	소 계				7,160	(중)27	7,187	－	(중)3,246.39	3,246.39	－	(중)6,553.56	6,553.56	－	－	－	－		
	4-1	4-1	농 구 장	수송동 785	608	－	608	－	－	－	－	－	－	－	－	－	－	－	수송택지
	4-2	4-2	X - G A M E 장	수송동 785	811	－	811	－	－	－	－	－	－	－	－	－	－	－	수송택지
	4-3	4-3	인 라 인 트 랙	수송동 785	1,241	－	1,241	－	－	－	－	－	－	－	－	－	－	－	수송택지
	4-4	4-4	실내배드민턴장	수송동 701-1	4,500	(중)27	4,527	－	(중)3,246.39	3,246.39	－	(중)6,553.56	6,553.56	－	－	－	－	－	변경
교 양 시 설	소 계				41,609	(감)2,561	39,048	7,325.90	(중)674	7,332.64	18,503.37	(중)1,947.27	20,450.64	－	－	－	－		
	5-1	5-1	공 연 장	지곡동 284	41,609	(감)2,561	39,048	7,325.90	(중)674	7,332.64	18,503.37	(중)1,947.27	20,450.64	－	－	－	－	－	변경
편 의 시 설	소 계				203	－	203	120	－	120	120	－	120	－	－	－	－		
	6-1	6-1	화 장 실	수송동 785	203	－	203	120	－	120	120	－	120	－	－	－	－	－	수송택지
기 타	소 계				84,580	(감)236	84,344	－	－	－	－	－	－	－	－	－	－		
	－	－	녹 지	－	84,580	(감)236	84,344	－	－	－	－	－	－	－	－	－	－		

3) 도로시설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연장(m)	면적(㎡)	기능	시점	중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 계 (13개 노선)					1,361	5,982				
신설	중로	3	1	9.5~14	307	3,336	진입로	지곡동 276-1	수송동 788	노선신설
소 계 중로3류 (1개 노선)					307	3,336				
기정	소로	3	1	5	25	125	진입로	수송동 785	수송동 785	
기정	소로	3	2	5	20	100	진입로	수송동 785	수송동 785	
기정	소로	3	3	5	63	315	진입로	수송동 785	수송동 785	
기정	소로	3	4	4	45	180	진입로	나운동 126-13	나운동 1493-15	
폐지	소로	3	8	2	215	406	연결로	지곡동 286-13	수송동 785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9	2	225	450	연결로	나운동 114-21	수송동 785	
변경	소로	3	9	2	150	290	연결로	나운동 114-21	수송동 785	연장변경
기정	소로	3	10	2	468	936	연결로	지곡동 286-6	나운동 128-11	
기정	소로	3	11	2	69	138	산책로	나운동 128	나운동 128-3	
기정	소로	3	12	3	41	123	진입로	수송동 785	수송동 785	
기정	소로	3	13	3	31	93	연결로	수송동 785	수송동 785	
기정	소로	3	14	3	50	150	연결로	수송동 785	수송동 785	
기정	소로	3	15	3	12	36	연결로	수송동 785	수송동 785	
기정	소로	3	16	2	80	160	연결로	수송동 785	수송동 785	
소 계 소로3류 (12개 노선)					1,054	2,646				

2. 도시계획시설(새들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1 - 7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9. 30.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 군산시 달여길 28외 7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149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소방서)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소방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9월 30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사정동 1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소방서)

나. 명 칭 : 군산소방서 부속창고 2동 증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5,717㎡ (대지 5,226㎡/ 도로 491㎡)

나. 규 모 : 건축면적 1,161.55㎡ 건축연면적 3,854.85㎡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 3가 1번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전라북도지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1. 6. ~ 2011. 8.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1-1514호

2011년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실시 공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위해 철새들의 먹이 및 휴식공간(쉼터)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 보전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이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사업시행지침(환경부)

□ 대상지역 :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 일원 430ha

□ 사업유형

- 보호활동 관리계약 : 벗짚존치
- 보호활동 관리계약 : 무논조성(저지대농지에 한함)

□ 사업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11. 09. 28 ~ 2011. 10. 12
- 신청장소 : 군산시 철새생태관리과(철새조망대) 또는 나포면사무소
- 신청대상 : 사업지역 내 경작자
- 신청방법 : 청약서에 의한 신청 (청약서 비치 : 나포면사무소 및 철새조망대)
- 구비서류 : 경작확인서(해당 이장 확인 필)

□ 계약체결

- 체결방법 : 추진협의회 협의 조정 후 대상지역 주민과 계약 체결
- 사업추진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년 2월말까지

□ 문 의 처 : 철새생태관리과(☎453-7213, 7214)

2011년 9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1-1543호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군 산 시 장

1. 2011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1년 6월 1일
- 나. 개별 주택수 : 152호 (금동 1-41번지 외 151호)
- 다. 공시 안내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 라. 열람 안내 : 시청 세무과(2층), 군산시홈페이지(www.gunsan.go.kr)

2. 이의신청

- 가. 신청기간 : 2011. 9. 30 - 11. 1
-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 다. 제출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2층)
-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내에 제출
(서식비치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
-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와 재검증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 450-4290,6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1-1545호

『전라북도 경관계획』 공고

「전라북도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전라북도 경관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0년 , 목표년도 2025년
- 공간적 범위 : 8,061km² (전라북도 행정구역 전역)

나. 주요내용

- 경관자원 현황 및 분석, 경관의식조사, 경관계획 미래상 및 목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 실행계획(경관협정 및 운영방안, 경관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구축) 등

2. 공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장 소 : 군산시 도시계획과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063-450-6258

나. 열람기간 : 2011. 9. 30. ~2011. 10. 29. (30일간)

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경관계획』 요약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 및 전북도청 토지주택과(☎ 063-280-433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